

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전사적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2024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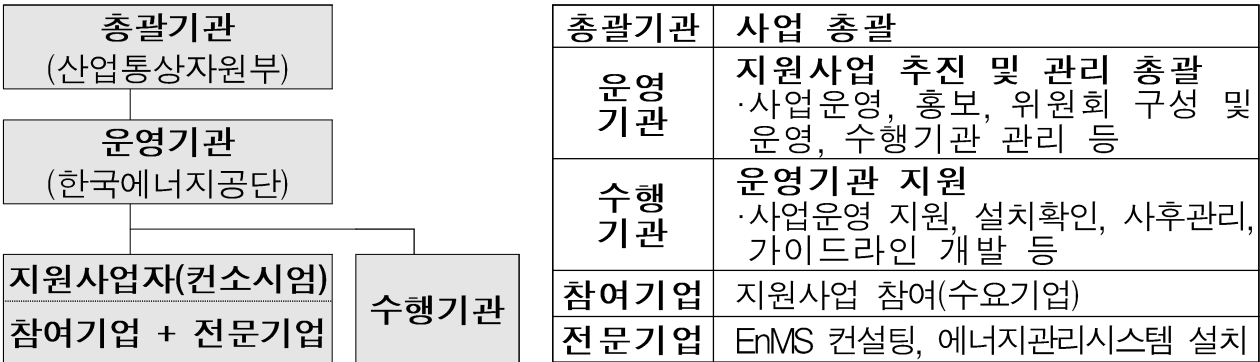
2024년 3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컨설팅, 에너지사용의 실시간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지원
 -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 지원예산 : 약 2,700백만원 *지원예산은 1차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추진체계 및 용어정의

□ 추진체계



□ 용어 정의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 (전문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계측·제어·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 보유 기업
- (지원사업자) 참여기업과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지원사업자 단위로 지원대상 선정
- (수행책임자) 지원대상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책임자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 사업장
 -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공고 첨부 <에너지사용량 산출 툴>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량신고서 또는 에너지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에너지사용량은 해당 사업장의 2022년 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2023년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사업신청 가능
- 참여기업을 수행책임자로 하며, 참여기업에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 * EnMS 도입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으로, 기 구축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및 A/S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기업은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사업장 규모별, 에너지사용량별 차등 지원

<사업장 규모 및 에너지사용량별 지원기준>

구분	정부 지원	민간 부담	에너지사용량(toe)	지원한도 (억원)	비고
중소	70%	30%	500 이상~2,000 미만	1	* VAT는 참여 기업에서 부담
중견	40%	60%	2,000 이상~10,000 미만	1.5	
			10,000 이상	2	

* 인프라 구축 비용은 계측기와 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4 사업내용

□ 사업구성 : 4개 부문(①컨설팅 ②계측인프라 구축 ③제어인프라 구축 ④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모두를 포함한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①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컨설팅

- 기업의 에너지경영 진단, 에너지경영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 PDCA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참여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제어·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데이터연계 방안 수립
- 구축된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마련,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 시스템구축 후 10일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성과 또는 절감 잠재량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지원사업 전·후 참여기업의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수준에 대해 진단·비교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과점검 및 사업장의 지속적 에너지효율화 추진 컨설팅

② 계측 인프라 구축

- 에너지사용량(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인자(온도, 압력 등)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 계측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및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③ 제어 인프라 구축

- 대상설비에 적합한 에너지절감 제어 알고리즘 설계
- 에너지절감 제어기술을 적용한 장치, 설비 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 장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PLC · HMI · DCS 등의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 제어 시스템의 통신 모듈(드라이버) 설치
- 단, 에너지비용만을 줄이는 기술(최대수요전력제어 등) 또는 단순 에너지 절감 기법(보온재 설치 등)은 본 사업의 제어 인프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어 인프라는 첨부 'EMS 활용 절감기법' 등을 적용하여 구축 가능하며, 제어 인프라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은 <에너지절감량 산정 툴>을 활용하여 타당하게 산정·제출되어야 함

※ 제어 인프라는 사업 후 에너지절감량이 계측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타 시스템(MES, ERP, 설비제어 등)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마련
- 에너지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원단위, 효율 등)
 - * 영향인자 계측기 설치 시 반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제어 대상설비의 최적값 입력 및 감시·관리 기능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구축,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3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기타 증빙서류* 등을 e나라도움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증빙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조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마감일 18:00까지 e나라도움 온라인신청서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4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참여기업>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에너지사용량신고서, 한국전력공사 계약 종합정보 내역 등
3	에너지사용량 산정 툴 작성본	에너지사용량 산정 툴(첨부) 활용
4	에너지절감량 산정 툴 작성본	에너지절감량 산정 툴(첨부) 활용
5	사업자등록증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참여기업>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8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각각 발급
9	법인인감증명서	
10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1	비교견적서	부문별 각 3부 이상
11-1	부문별 세부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첨부) 활용
11-2	계측,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에 설치할 제품의 사양자료	
12	사업장 설비 배치도, 설계도, 결선도 등	
13	사업장 주요 설비 사양자료	
<전문기업>		
1	사업자등록증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4	참여인력증빙서류	
4-1	재직증명서	
4-2	경력증명서	
4-3	학력증명서	
4-4	자격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문의처 : 052)920-0395, 0396

6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사전 적합성 검토 및 선정평가를 거쳐 후보 선정 후, 사업비 검증 및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①적합성 검토	②선정 평가	③사업비 검증	④협약체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지정 회계법인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자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확정	·사업타당성, 사업전략, 사업효과, 수행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원 사업자 선정	·사업비 관련 제출 서류 확인, 사업비 적정성 검증	·사업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정 후 협약체결
서면검토	발표평가 (수행책임자 PT 발표)	서면검토	대면(또는 서면)

* 운영기관은 각 선정절차 단계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①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참여 제한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형식적 요건 미충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음

1. 중소 또는 중견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없는 참여기업의 사업
2.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참여기업의 사업
3. 컨설팅, 계측,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4개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참여기업의 사업
5. 휴·폐업 중인 참여기업 또는 전문기업이 신청한 사업
6. 동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정산 및 반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7.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사업계획서의 내용 파악이 불가하거나, 제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단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한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 선정 평가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업 추진전략, 사업효과, 전문기업 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사업자 선정
 - * 운영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발표평가에서 수행책임자는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들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단, 과거 동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 * 스마트에너지 FEMS보급 지원사업,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등

③ 사업비 검증

-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세부산출내역서, 제품의 사양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
- 운영기관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④ 협약 체결

- 협약 대상자는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을 조정하여야 함
-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협약서를(별지 제3호) 작성하여, 운영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별도 지정한 기한 내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등을 보완·조정하지 않거나, 별도 지정한 기한 내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협약체결 후 지원사업자는 수정·보완된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하며, 원본 1부는 운영기관에 우편으로(또는 직접) 제출

□ 평가기준 및 가감점

○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사업타당성 (15)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사업목표의 적합성 •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15
사업계획 (45)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컨설팅 전략 - 에너지경영시스템 체계 구축의 적합성		10
	• 계측 시스템 구축 전략 - 주요 에너지이용 선정의 적합성 - 계측 포인트 선정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		10
	• 제어 시스템 구축 전략 - 제어 설비의 도입 타당성 및 신뢰성		10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및 기능의 적합성		10
	• 성과관리 전략 -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의 타당성		5
사업효과 (15)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5
	• 에너지절감 잠재 효과 * 절감 잠재량(toe/년)÷시설투자 총 사업비(억원) ※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과 연동하여 점수 부여		10
사업수행 능력 (15)	• 전문기업 유사사업 참여 실적	계량평가 기준에 따름	5
	• 전문기업 신용평가 등급		5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사업추진 역량		5
사후관리 (5)	• 유지보수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 기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5
자금조달 적정성 (5)	• 정부지원금 외 민간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합 계			100

○ 가점대상 및 증빙서류

※ 가점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No.	가점대상	가점	제출 증빙서류	비고
1	중소기업	2점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2	KEEP 30(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기업	1점	KEEP30 협약서, 협력업체 확인서	<문의처> 052-920-0385
3	2023년도 KEEP+(중소·중견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1점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문의처> 052-920-0402
4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한 ‘산업 진단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진단을 완료한 사업장	1점	산업진단보조 지원 비용 지급 통지서	<문의처> 052-920-0653
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과제* 참여기관이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보급형 표준플랫폼을 적용하는 사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형 표준플랫폼 개발 및 실증	1점	-	사업계획서에 명시 시 과제를 주관기관을 통해 확인 예정

○ 감점항목

※ 감점합계는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No.	감점항목	감점
1	본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비 정산, 반납 등이 완료되지 못한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참여기업 또는 전문기업	1점
2	2023.12.31. 기준, 사업비 집행(e나라도움)이 완료되지 못한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참여기업 또는 전문기업	2점
3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수행을 포기한 지원대상의 참여기업 또는 전문기업	2점
4	2023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여기업	3점
5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참여기업 또는 전문기업	3점

* 컨소시엄(지원사업자)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 감점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음

7 추진일정

절 차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사업자 모집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3~4월	운영기관
사업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e나라도움)	3~4월	지원사업자 → 운영기관
적합성 검토	·사업 신청 적합성 검토 ·평가대상 제외사업장 통보	4월	운영기관
선정 평가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 평가결과 통보	4월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사업비 검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적정 사업비 통보	4~5월	운영기관 (회계법인)
사업심의·조정	·사업계획서 수정(사업내용, 사업비 등)	5월	운영기관 지원사업자
협약체결	·최종 지원사업자 선정 통보 ·협약 체결	5월	운영기관 지원사업자
사업추진	·EnMS 인프라 구축(중간보고, 7월)	5~10월	지원사업자
설치확인	·EnMS 인프라 구축 설치확인	9~10월	운영기관
성과도출	·계측 데이터 기반 성과 도출	10월	지원사업자
최종보고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11월	지원사업자
성과보고회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1월	운영기관
사업비 정산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증	12월	지원사업자 회계법인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사업수행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4호)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계측 인프라, 제어 인프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전문기업은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과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후 지원사업장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3회 이상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시,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EnMS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이 반영된 중간보고서 제출	7월 이내
2차	계측 및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9월 이내
3차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0일 이상의 실제 데이터 활용·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 운영기관은 필요시 현장 실사 및 사업진행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진도보고 결과 및 현장실사 결과, 해당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사업완료

- 지원사업자는 협약서의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인프라의(계측,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인프라의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보고서(별지 제16호), 협약서(별지 제18호)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설치확인을 받아야 함
 - 운영기관은 제출된 설치완료보고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설비설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설치확인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제출 서류, 현장 등) 대해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0일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 에너지·온실가스 절감효과, 설치확인 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를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절감효과 확인을 위해 추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운영기관은 1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보고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참여기업은 인프라 구축연도 이후부터 5개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매년 6월 말까지), 운영기관은 5개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전문기업은 인프라 구축연도 이후부터 5개년간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매년 6월 말까지)
- 참여기업, 전문기업은 사후관리 의무기간(사업종료 후 5년) 동안 운영기관의 사후관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등에 대해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관리

- 참여기업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는 동 계좌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 운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선금금) 신청

- 참여기업은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지원금(선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선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선금금) 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선금금) 신청 시, 운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전문기업이 참여기업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금)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선금금)을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4개 부문별로* 구별하여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컨설팅, 계측 인프라 구축, 제어 인프라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금(잔금) 신청

-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전문기업이 참여 기업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을 입금받은 후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4개 부문별로* 구별하여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컨설팅, 계측 인프라 구축, 제어 인프라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기관은 설치완료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정부 지원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된 경우,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7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정확하게 작성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요청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10 사업변경 관련 유의사항

□ 사전승인 신청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으로 운영기관에 승인요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문으로 운영기관에 승인요청 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및 변경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변경 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시,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취소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② 보조비목 간의 전용
 - ③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절차

①e나라도움 로그인 → ②사업수행관리 → ③신청관리 → ④사업변경관리 → ⑤사업변경신청 → ⑥해당사업 선택 '신청서 작성' 클릭, 사업변경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변경 보고

- 주요 변경사항 이외 투입 인력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보고

11 기타 유의사항

□ 중요재산 관리

-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 을 통해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현장 실태조사,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 이전에 참여기업과 전문기업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정부지원금 포기신청을 한 경우
3.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6.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최근 3년 이내 국세·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8. 유사한 목적의 정부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9.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이나 제출 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10.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12.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13.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본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5.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 연도 후 5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6.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8. 그 밖에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 위반 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별표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참여기업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참여기업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결과, 제품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참여기업과 전문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에 따름